

예산총칙

2023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419,359,769	72,580,793
일반회계	2,009,022,477	60,270,674
특별회계	410,337,292	12,310,119
공기업특별회계	310,607,559	9,318,22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21,116,081	3,633,48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89,491,478	5,684,744
기타특별회계	99,729,733	2,991,892
주택사업특별회계	241	7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8,611,603	258,348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00,799	3,024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314,995	9,450
수질개선특별회계	14,320,054	429,602
기반시설특별회계	166,116	4,983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36,878	1,106
지하수특별회계	980,950	29,429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45,405,444	1,362,163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29,226,980	876,809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565,673	16,97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69,900,000천원으로 한다.